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행계획(안)

2024. 3.

한 국 장 학 재 단

초 중 등 장 학 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 2

Ⅱ. '23년 운영 주요 결과 ····· 5

Ⅲ. 장학생 선발 ····· 8

Ⅳ. 장학생 지원 ····· 25

Ⅴ. 장학생 자격관리 ····· 31

Ⅵ. 장학금 지급 사후관리 ····· 43

Ⅶ. 추진 일정 ····· 47

Ⅷ. 2024년 실행예산 ····· 48

[별첨] 장학금 카드 사용 가능범위 안내 ····· 49

2024년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사업 예산			•1,154억 원 －사업비: 273억 원 －운영비: 5.6억 원 －원금보전성 출연금: 875억 원 ※ 누적 3,500억 원 출연 완료('20.~'23.)	‣ **324억 원** – 사업비: 338.7억 원 – 운영비: 5.6억 원 – 기금운용수익: 20억원(차감)
신규선발	인원		•(계획) 3,000명, (실적) 3,000명	‣ (계획) 3,000명
		기본유형 (장기지원)	－(꿈) 2,000명	－**(꿈) 1,800명** －**(다문화) 200명**
		특별유형 (한시지원)	－(SOS) 1,000명* * 1학기(7월) 300명, 2학기(9월) 700명	－(SOS) 1,000명* * 2학기 1천 명 통합 선발
	선발기준	**성적심사 강화**	•(중2~고1) D등급 이상 •(고2~고3) D 또는 7등급 이상	‣ (중) **C등급** 이상 ‣ (고) **C등급** 또는 **7등급 이상**
		학업 계획서	•학년 관계없이 동일한 문항으로 학업계획서 작성	‣ **학년 수준**(중1/중2~3/고)별로 학업계획서 **문항 차별화** 작성
		지원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포괄적으로 규정	‣ 지원 가능 여부를 **학교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규정
계속지원 심사		**성적심사 강화**	•(중~고) 성적심사 없음 •(대학) B학점(80점) 이상	‣ (중) 성적심사 없음 ‣ (고) **C등급 또는 7등급 이상** ‣ (대학) B학점(80점) 이상
		학업 보고서	•1년 간 학업 및 멘토링 활동 결과를 **서술형**으로 작성	‣ 학업성과를 **객관식**으로 작성하여, **성장 경로**를 **데이터화**
교육지원		**멘토링**	•멘토링 활동비 **분기당 10만원**	‣ 장기 계속 멘토링은 활동비 10만 원 추가 지원
		컨설팅	•1:1 컨설팅 인당 **평균 1회**(1시간) 지원	‣ 1:1 컨설팅 인당 **평균 2회 이상** 지원 ‣ 장학생 **마음건강 집중 관리**
사후관리 강화		**카드 사용 업종 개선**	•64개 업종 – 통신기기, 가구 업종 추가	‣ 78개 업종(+14개) – **의료 추가, 숙박 제외**
		사용점검 강화	•**업종 단위**로 카드 사용 관리	‣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업종(인터넷쇼핑, 일반음식점)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사용 제한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 사업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8조(장학제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국가의 책무) 등

□ 추진 경과

○ **('18. 8.)** 복권기금 등을 활용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교육부), 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문체부) 등 포함

○ **('18. 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대학생 → 대+초·중·고)를 통한 사업수행 근거 마련

○ **('19. 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꿈 유형) **1,500명 선발** 및 **지원**

○ **('19. 8.)**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 **('20. 1.)**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출연 협약식*** **개최**

* 기재부 복권위-교육부-재단 간 원금보전성 기금 3,500억 원에 대한 출연 협약

○ **('21. 7.)** '한국판 뉴딜 2.0' 신규 과제 채택

※ '22년 신규 장학생 선발 규모 확대 결정 (1,000명→2,000명)

○ **('19. 7. ~ '23. 10.) 총 장학생 9,500명***(SOS 장학금 포함) **선발** 및 **지원**

* ('19년) 1,500명 → ('20년) 1,000명 → ('21년) 1,200명 → ('22년) 2,800명 → ('23년) 3,000명

□ 2024년 예산: 총 32,413백만 원

○ 사업비 33,865백만 원 + 운영비 563백만 원 - 기금운용수익 2,015백만 원

※ 원금보전성 기금 3,500억 원 출연 기 완료('20년~'23년 875억 원)

□ 지원유형

○ (꿈·다문화 장학금)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까지 장기 지원

○ (SOS 장학금) 학업 중단위기 중·고생을 선발하여, 10개월간 한시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중1 ~ 고3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단, SOS 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 (지원인원) '24년도 신규 장학생(3천 명) 및 계속 장학생*(약 5천 명)

* '19 ~ '23년 선발 장학생 중 계속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학업장려비(매월 카드포인트) 및 교육 프로그램(멘토링 등) 지원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업 장려비	장학금 월 25만 원	장학금 월 35만 원	장학금 월 45만 원
교육 프로그램	복꿈 성장 멘토링(교사 등 교육 현장의 전문가와 1:1 멘토링) 복꿈 나눔 멘토링(대학생 선배 장학생과의 멘토링)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문화체험 · 대학탐방 등 활동 지원)		사회 환원 활동 참여 – 후배 장학생의 멘토 역할 수행 – 사회봉사 활동(30시간 이상)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장학증서 수여식 + 캠프 프로그램 + 기본교육)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진로 · 진학 · 취업 · 창업 등 장학생의 성장상황에 맞추어 세분화 지원)		
	심리안정 프로그램(장학생의 고민, 심리적 불안감 등에 대한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 SOS 장학생의 경우, 한시적 장학금(10개월간 월 30만 원)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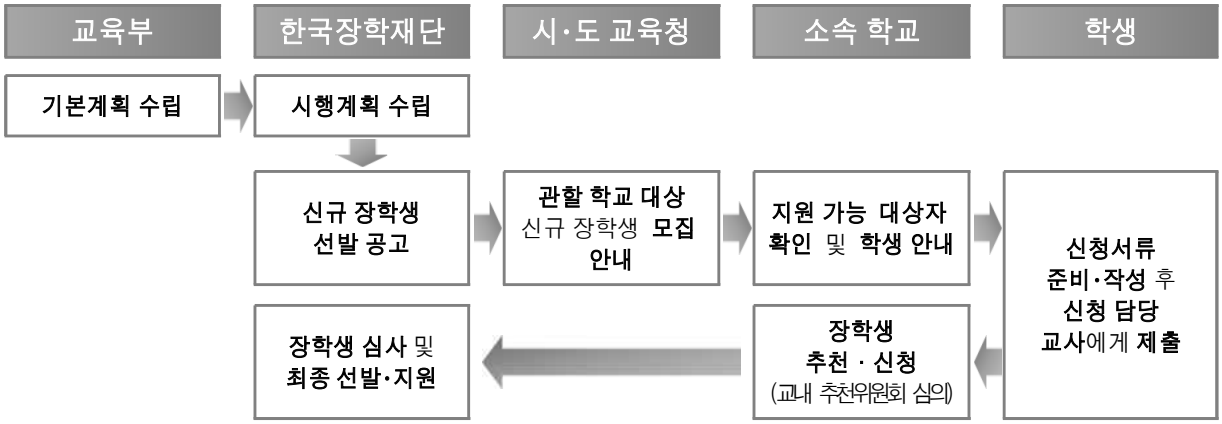

○ **(교육부)** 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승인, 사업운영 총괄

○ **(한국장학재단)** 시행계획 수립, 장학사업 운영, 출연금 관리 등

○ **(시·도 교육청)** 장학생 선발지원 및 관리지원, 협조체계 구축

○ **(학교)** 장학생 추천(교내 위원회 심의) 및 신청, 학생 서류 온라인 접수

○ **(학생(장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준비(학업 및 성장 관리)

□ 사업 일정

※ 아래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2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년 1월	2월	3월
꿈·다문화 유형 신규 선발	**신청** ➤ '24. 4. 1.~ 4. 26.											
		심사 및 선정 ➤ '24. 6월 말 결과 발표										
				지원(7월부터 지원)								
SOS 유형 신규 선발					**신청** ➤ '24. 8. 5.~ 8. 23.							
						심사및선정 ➤ '24. 9월 발표						
							지원(9월부터 지원)					
계속 지원 여부 심사				**보완 심사** ➤ '24. 7월 ~ 8월				**정기 심사** ➤ '24. 12월 ~ '25. 3월				
	수급자격 **소명 기간***					수급자격 **소명 기간***						
	*기초생활수급 · 법정 차상위 · 한부모가정 등 수급자격 미충족 시 3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복꿈 성장**(1:1) **멘토링**(연중 상시, 중 · 고생 학기별 2회 이상 필수)											
				복꿈나눔멘토링 대학생–중 · 고생 선후배 간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 문화체험, 대학탐방 등 특별활동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증서수여식 및 장학생·멘토 대상 필수교육 실시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Ⅱ '23년 운영 주요 결과

1 장기지원 유형의 꿈 장학금 신규 장학생 2,000명 선발

○ 저소득층 중·고생을 발굴, 대학 졸업시까지 **장기간 지원**

<꿈 유형 장학생 지역별 선발 결과(중·고등학생)>

(단위: 명)

지역	배정	신청	선발	지역	배정	신청	선발	지역	배정	신청	선발
서울	258	759	258	울산	45	102	45	전북	119	285	119
부산	114	332	114	세종	18	39	18	전남	134	251	134
대구	79	190	79	경기	406	1,058	406	경북	158	293	158
인천	99	265	99	강원	97	188	97	경남	161	394	161
광주	57	127	57	충북	72	157	72	제주	26	58	26
대전	53	136	53	충남	104	215	104	합계	2,000	4,849	2,000

2 학업중단 위기의 SOS 장학생 1,000명 선발

○ 재난·재해, 가정폭력·학대 등 **긴급구난 위기**에 직면한 **중·고생**을 **한시적으로 지원**(10개월)

<SOS 유형 장학생 선발 결과>

(단위:명)

분야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① 주소득자 사망, 구금 등	115	111	226
② 본인·가족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등	193	187	380
③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등	30	26	56
④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가정생활 곤란	25	22	47
⑤ 거주지 화재·재해 등으로 생활 곤란	22	16	38
⑥ 주·부소득자의 휴·폐업·화재로 영업곤란	30	31	61
⑦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86	106	192
합계	501	499	1,000

3 기존('19~'23년) 선발 장학생에 대한 안정적 계속지원 관리 수행

○ 계속 지원 정기·보완 심사*, 상시 자격변동 확인 등을 통해 **장학생의 적격성**을 **점검**하고 **선별된 장학생**에 대한 **지원 실시**

* 저소득 자격 및 학적 유지 여부, 장학생 활동 결과(학업·멘토링 보고서 작성) 등 점검

<계속 장학생(꿈·재능) 자격유지 현황('23년 12월 지급 기준)>

(단위:명)

유형	선발인원 ('19 ~ '23)	자격상태 현황			
		계속지원	유예[1]	상실[2]	종료[3]
꿈	6,786	5,152	371	1,242	21
재능	864	593	58	209	4
합계	7,650	5,745	429	1,451	25

1」 대학생의 휴학, 군입대 등

2」 타 장학금 선택, 포기, 학업중단, 상급학교 미진학, 계속지원 심사(수급자격 등) 탈락 등

3」 대학 졸업

4 장학생의 성장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학생의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복꿈 성장 멘토링 중·고생 필수	**복꿈 나눔 멘토링** 전체 장학생 자율
▶ **정서적 지지**와 **밀착 성장 지도**를 위해 **교사 등과의 1:1 멘토링 지원** - 학기별 2회 이상 활동 필수 - 1회 10만 원씩 활동비 지원(총 4회)	▶ **진학·성장 경험 공유**와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선·후배간 멘토링 지원** - 총 299명(140개 팀) 참여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 중·고생 대상	**장학생 심리안정 프로그램** 전체 장학생 자율
▶ 전년도 정의적 성장 하위자 대상 **다양한 문화체험, 대학탐방** 등 **특별활동 지원** - 총 336명(166개 팀) 지원	▶ 멘토교사 또는 선배 멘토에게 나누기 어려운 고민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상시 지원** - 총 298회 상담 지원

○ 자긍심 고취 및 교육적 경험 제공을 위한 복·꿈·페 성공 운영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
전체 장학생 참여

- ▶ 온·오프라인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장학증서 수여식으로 장학생 자긍심 고취
- ▶ 복꿈 마일리지 제도 도입으로 장학생의 능동적인 참여 및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운영 시기) '23. 7 ~ 10월
- (참여 인원) 멘토·멘티 총 9,288명 참여, 장학생 5,569명 교육 이수
- (프로그램 만족도) 4.72점(5점 만점) 달성
- (세부 프로그램) 증서수여식, 축사, 명사특강, 축하공연, 온라인 직업체험, 고민상담, 신규 장학생·멘토 교육, 멘토링 활동 등

○ 장학생들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지원

진로 역량 개발 컨설팅
전체 장학생 참여

- ▶ 온라인 교육이수 관리시스템(LMS)을 이용한 참여자 수강현황, 마일리지 관리 등 장학생 개인별 학사관리 및 학습지원
- ▶ 장학생의 진로 선택권 부여를 통해 맞춤형 지원 강화
- (운영 시기) '23. 6 ~ 11월
- (참여 인원) 총 5,794명
- (프로그램 만족도) 4.76점(5점 만점) 달성
- (세부 프로그램) 학제·학년별 맞춤형 세부 구성

구분	중학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및 고3
기본 방향	성공적 중학교 진로 설계	고교 입학 준비 진학 특강	대학 입시 준비 입시전형 대비	대학 입시 실전 면접·정시 전략	취·창업 대비 직무설정 등
공통 과정	신설 복꿈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장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교육 이수율 96.5%(전년比 1.3%p↑)				
선택 과정	확대 개념특강(진로역량 기본지식) + 실전특강(진로·진학 세분화·진로역량 기반강화) 총 70개의 학년별 세분화된 특강 프로그램 제공				
심화 과정	확대 1:1 전문가 컨설팅 및 심리상담 지원 컨설팅 개별 진단검사 자료를 이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총 2,023회) 심리상담 다양한 상담 채널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총 227회)				

Ⅲ '24년 장학생 선발

< '24년 신규 장학생 선발 주요 내용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꿈 장학금</th><th>다문화 장학금</th><th>SOS 장학금</th></tr>
<tr><td colspan="2">선발인원</td><td colspan="3">• 1,800명 • 200명 • 1,000명
※ 사업 잔여 예산 및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td></tr>
<tr><td rowspan="4">선발 자격</td><td rowspan="2">기본 요건</td><td colspan="3">• (공통)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중·고교 재학생(중1~고3) / 만 24세 이하</td></tr>
<tr><td>•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td><td>• 아래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②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td><td>• 긴급구난 사유 해당하는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td></tr>
<tr><td>교과</td><td colspan="2">• (성적) C등급 이상 또는 7등급 이내</td><td>–</td></tr>
<tr><td>비교과</td><td colspan="2">• (출결)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봉사) 10시간 이상</td><td>–</td></tr>
<tr><td colspan="2">추천방식 및 추천인원</td><td>• (공통) 학교 추천 방식
• 학교당 최대 2명 추천</td><td>• 추천 인원 제한 없음</td><td></td></tr>
<tr><td rowspan="5">제출 서류</td><td rowspan="3">신청 시</td><td colspan="2">• 신청인 기본정보
• 신청인·보호자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1인 동의 필수</td><td>• 신청인 동의서</td></tr>
<tr><td colspan="2">•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수급자격 전산 조회 불가 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td><td>–</td></tr>
<tr><td colspan="2">• 나의 꿈 도전계획서</td><td>• SOS 장학금 신청서</td></tr>
<tr><td rowspan="2">심층 평가 후</td><td colspan="2">•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포함)</td><td>–</td></tr>
<tr><td colspan="2">•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 (학교장 직인 포함)</td><td>–</td></tr>
<tr><td rowspan="3">심사·선발</td><td>서류심사</td><td colspan="3">•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 대상자 입력정보 확인(한국장학재단 실무진)</td></tr>
<tr><td>심층평가</td><td>• '나의 꿈 도전계획서' 기반 평가(꿈 평가단)</td><td>• '나의 꿈 도전계획서' 기반 평가(다문화 평가단)</td><td>• 'SOS장학금 신청서' 기반 평가(SOS 평가단)</td></tr>
<tr><td>최종선발</td><td colspan="2">•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의결</td><td>–</td></tr>
</table>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부예산 편성 등 정책 상황에 따라 지원 수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교육부 정책 결정에 따라 계속 지원 장학생에 대한 자격기준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신청 시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장학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꿈 장학금

학교가 **추천**한 **중·고생 중**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

□ 신규 선발 자격요건: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② **(소득 기준) 학교 추천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교과 기준) 직전 학년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 ~ 고1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 단, 직전 학년이 자유학년(기)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년(기)가 PASS일 경우 인정(전 과목 PASS)
고2 ~ 고3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최대 12과목까지 입력 가능)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Ⅰ), 외국어계열(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 중에서 과목 선택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산출되는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④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봉사활동**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대상	출결	봉사
공통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단,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24년 선발 규모: 총 1,800명

○ 학제·학년(중1, 중2~3, 고)·지역별 선발 인원은 학제·학년·지역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 사업 잔여 예산 및 타 유형 선발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 변동 가능

□ 꿈 장학생 선발절차

1단계 학교추천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심층평가	4단계 최종선발
학교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추천 **(학교별 최대 2인)**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소득·성적·출결·봉사)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 (꿈 평가단)	**최종 장학생 확정**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24. 4. 1. 9:00 ~ 4. 26. 18:00	`24. 5월 1주 ~ 5월 3주	`24. 5월 4주 ~ 6월 3주	`24. 6월 말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 **학교 추천**

- **(추천 대상)**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교내 장학생 추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각 학교별 최대 2인**까지 추천 가능**

* 학교별 장학생 선정 등을 위해 기 구성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추천 가능

**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에서 중·고 통합으로 학제가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중·고 각 학제별 최대 2인까지 추천 가능

- **(추천 기준)** 추천대상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인성, 장학금 지원 필요성(진로, 학업계획의 구체성, 가치관, 실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 추천 시 유의사항 〉

• **(사회적 물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

* ❶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❷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 **(이중수혜) ❶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❷저소득층 대상 ❸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❹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❶+❷+❸+❹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이 불가**하나, **최종 선발일 이후 재단이 통지한 기한 내 타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기관 발급)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❶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❷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❸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❹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다문화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단, `24년 이전 SOS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꿈·다문화 장학금으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4년 4월 1일(월) 9:00 ~ 4월 26일(금) 18:00**

※ 신청기간 관련 세부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며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반드시 신청마감일 내 온라인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교사 또는 교직원***은 **재단 학자금 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생의 기초정보 및 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을 **온라인 접수·제출****

* 신청교사 또는 교직원은 복꿈 성장 멘토링 멘토로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함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제출서류)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추천대상의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및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만 14세 미만 학생 추천의 경우, 반드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3번) 내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꿈 장학금 제출서류(신청 · 추가 서류) 목록 〉

구분		제출 서류		세부 내용	비고
신청시 제출 (신청서류)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학생 기본정보 ※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멘토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제출 불필요	–
	2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 (부모)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 복지 센터
	3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학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	–
	4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 대리인 (부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용)	–
	5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꿈)	학생	학생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확인 등	–
	6	나의 꿈 도전계획서	학생	학업 및 진로 희망에 대한 구체적 계획	–
	7	(필요 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택 1)	기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행정 복지 센터
			한부모	한부모가족 증명서	
			법정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심층 평가 통과 후 제출* (추가서류)	8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멘토가 직접 작성한 멘토링 활동 계획 제출 ※ 학교장 직인 포함	–
	9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 추가서류 제출은 심층평가 통과자에 한하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추가서류 제출을 별도 안내할 예정(반드시 기한 내 추가서류 제출 필요)

○ 2단계 서류 심사

- **(제출서류 확인) ①신청자 학년 정보**(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②만 14세 미만 신청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③필수 신청 서류 5종*** **제출 유무** 및 **④필수 기입사항**(서명 등) **점검**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꿈), 나의 꿈 도전계획서

- **(수급자격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신청 학생 가정의 **저소득*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수급자격 전산확인 불가자의 경우 수급자격 증빙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 **(교과·비교과 요건 확인) 직전 학년**의 **최소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심층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신청 시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최종 확인

○ 3단계 심층 평가

- **(꿈 평가단 구성)** 서류심사 통과자의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천·구성**

〈 꿈 평가단 구성 기준 〉

· **(구성)** 평가 그룹별 **총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복지·인재개발 전문가, 입학사정관, 교원, 장학사 등 교육·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 추천명단으로 구성한 위원 Pool에 무작위 순위를 부여하여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 **(절차) 17개 시·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소속기관 관할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평가위원**으로 **배정**

- **(평가내용)** 「**나의 꿈 도전계획서**」에 기술된 학생의 역량, 잠재력, 발전 가능성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평가그룹별 **5인 1조**로 구성하고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학제·학년·지역별 배정인원 범위 내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부여****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추가 서류제출) 심층평가 통과자**는 **필수서류 2종**을 **멘토**를 통해 학자금지원시스템으로 **통지 기한 내 제출**(별도 통지 예정)*

  * **통지 기한 내 미제출 시, 후순위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예정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1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	멘토 작성	· 멘토링 활동 계획서: 멘토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하고, 장학생 확인 서명과 소속 학교장 직인(필수)을 받아 제출 ·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본인 동의 · 서명	–
2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또는 멘토 발급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및 정부24 (온라인)

※ 날짜, 성명, 자필서명, 학교장 직인, 원본대조필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단계 최종 선발

- **(심의주체)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

- **(구성)** 교육·장학 등 관련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7인 내외
- **(기능)** 장학생 최종 선발 심의·의결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
- **(방법)**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세부사항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름

- **(선발방법)** 17개 지역의 **학제·학년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심층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부여**하며, **추가 서류제출 결과**를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장학생 심의·의결**

〈 최종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최종 선발일 이후 최초 장학금 지급일 전까지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동일 지역 내 후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후순위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 지역의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최종 선발자가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 기관 발급)를 **재단이 통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장학생 이중수혜 기준 p.11 참고

- **(결과안내)**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선정 결과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사항 **개별통보 예정**

나. 다문화 장학금 학교가 추천한 다문화 가정의 중·고생 중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

□ 신규 선발 자격요건: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② **(소득 기준) 학교 추천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교과 기준) 직전 학년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1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 ~ 고1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 단, 직전 학년이 자유학년(기)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년(기)가 PASS일 경우 인정(전 과목 PASS)
고2 ~ 고3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최대 12과목까지 입력 가능)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Ⅰ), 외국어계열(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 중에서 과목 선택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산출되는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④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봉사활동**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대상	출결	봉사
공통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단,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10시간 이상**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24년 선발 규모: 총 200명

○ 학제·학년별 선발(중1, 중2~3, 고) 인원은 학제·학년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 사업 잔여 예산 및 타 유형 선발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 변동 가능

□ 다문화 장학생 선발절차

1단계 학교추천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심층평가	4단계 최종선발
학교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추천 **(학교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음)**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소득·성적·출결·봉사)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 (다문화 평가단)	**최종 장학생 확정**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24. 4. 1. 9:00 ~ 4. 26. 18:00	`24. 5월 1주~5월 3주	`24. 5월 4주~6월 3주	`24. 6월 말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 **학교 추천**

- **(추천 대상)**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교내 장학생 추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이 장학생 추천 가능**

  * 학교별 장학생 선정 등을 위해 기 구성된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추천 가능

- **(추천 기준)** 추천대상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인성, 장학금 지원 필요성(진로, 학업계획의 구체성, 가치관, 실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 학생 추천(신청) 시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문화가정 여부는 소속 학교**에서 **추천**한 내용으로 **인정(단,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다문화) 내 소속 학교장 추천 및 직인 필수)**

* (예시)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 추천 시 유의사항 〉

• **(사회적 물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

* ❶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❷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 **(이중수혜) ❶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❷저소득층 대상 ❸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❹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❶+❷+❸+❹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이 불가**하나, **최종 선발일 이후 재단이 통지한 기한 내 타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기관 발급)를 제출할 경우 인정**(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❶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❷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❸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❹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다문화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단, `24년 이전 SOS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꿈·다문화 장학금으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4년 4월 1일(월) 9:00 ~ 4월 26일(금) 18:00**

※ 신청기간 관련 세부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며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반드시 신청마감일 내 온라인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교사 또는 교직원***은 **재단 학자금 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접속**하여 학생의 기초정보 및 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을 **온라인 접수·제출****

* 신청교사 또는 교직원은 복꿈 성장 멘토링 멘토로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함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제출서류)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추천대상의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및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만 14세 미만 학생 추천의 경우, 반드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3번) 내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꿈 장학금 제출서류(신청 · 추가 서류) 목록 〉

구분		제출 서류		세부 내용	비고
신청시 제출 (신청서류)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학생 기본정보 ※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멘토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제출 불필요	–
	2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 (부모)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 복지 센터
	3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학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	–
	4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 대리인 (부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용)	–
	5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다문화)	학생	학생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확인 등 ※ 작성 시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 · 직인 필수	–
	6	나의 꿈 도전계획서	학생	학업 및 진로 희망에 대한 구체적 계획	–
	7	(필요 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택 1)	기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행정 복지 센터
			한부모	한부모가족 증명서	
			법정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심층 평가 통과 후 제출* (추가서류)	8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멘토가 직접 작성한 멘토링 활동 계획 제출 ※ 학교장 직인 포함	–
	9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 추가서류 제출은 심층평가 통과자에 한하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추가서류 제출을 별도 안내할 예정(반드시 기한 내 추가서류 제출 필요)

○ 2단계 서류 심사

- **(제출서류 확인) ①신청자 학년 정보**(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②만 14세 미만 신청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③필수 신청 서류 5종*** **제출 유무** 및 **④필수 기입사항**(서명 등) **점검**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보호자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나의 꿈 도전계획서 표지(다문화), 나의 꿈 도전계획서

- **(수급자격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신청 학생 가정의 **저소득*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수급자격 전산확인 불가자의 경우 수급자격 증빙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 **(교과·비교과 요건 확인) 직전 학년**의 **최소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심층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신청 시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최종 확인

○ 3단계 심층 평가

- **(다문화 평가단 구성)** 서류심사 통과자의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천·구성**

  ※ 꿈 장학금 심층평가 위원 POOL 활용

- **(평가내용) 「나의 꿈 도전계획서」**에 기술된 학생의 역량, 잠재력, 발전 가능성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평가그룹별 **5인 1조**로 구성하고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학제·학년별 배정인원 범위 내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부여****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추가 서류제출) 심층평가 통과자**는 **필수서류 2종**을 **멘토**를 통해 학자금지원시스템으로 **통지 기한 내 제출**(별도 통지 예정)*

  * **통지 기한 내 미제출 시, 후순위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예정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고
1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	멘토 작성	· 멘토링 활동 계획서: 멘토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하고, 장학생 확인 서명과 소속 학교장 직인(필수)을 받아 제출 · 멘토개인정보동의서: 멘토 본인 동의 · 서명	–
2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또는 멘토 발급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및 정부24 (온라인)

※ 날짜, 성명, 자필서명, 학교장 직인, 원본대조필 누락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단계 최종 선발

- (심의주체)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

- **(구성)** 교육·장학 등 관련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7인 내외
- **(기능)** 장학생 최종 선발 심의·의결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
- **(방법)**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세부사항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름

- (선발방법) 학제 · 학년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심층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며, 추가 서류제출 결과를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장학생 심의·의결

〈 최종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최종 선발일 이후 최초 장학금 지급일 전까지 선발인원 결원 발생 시, **동일 학제 · 학년 내 후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후순위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 학제 · 학년의 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최종 선발자가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 기관 발급)를 **재단이 통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장학생 이중수혜 기준 p.11 참고

- (결과안내)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선정 결과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사항 개별통보 예정

다. SOS 장학금

신청한 중·고생 중 위기상황 정도, 학업 열의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

□ **신규 선발 자격요건: ① ~ ②을 모두 충족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①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긴급 구난사유 해당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상세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② **(긴급 구난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

* 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 **'24년 선발규모: 총 1,000명**

○ **학제·학년별 선발**(중 1, 중2~3, 고) **인원**은 **학제·학년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 사업 잔여예산 및 별도 재원 확보 등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변동 가능

○ **(유의사항) SOS 장학금은 '24년 꿈·다문화 장학금 선발 시 중복신청 불가 및 기존 SOS 장학생**의 경우 **'24년 SOS 장학금 재신청 불가**

□ **선발절차**

1단계 학교추천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심층평가 및 최종선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추천** **(학교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음)**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SOS 장학금 신청서」 평가** (SOS 평가단) **및 최종 장학생 확정**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생략
'24. 8. 5. 9:00 ~ 8. 23. 18:00	'24. 8월 4주 ~ 9월 1주	'24. 9월 말

※ 학교 폭력 가해 이력 외 소득·성적·출결·봉사 등 모든 자격 심사 제외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단계 학교 추천

- **(추천 대상)** 각 학교는 **추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발굴**하여 **학교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이 장학생 추천 가능**

〈 추천 시 유의사항 〉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불가**
  * ❶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❷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 **(중복신청)** '24년 꿈 · 다문화 장학금 선발 시 **중복신청 불가**
- **(기 수혜자)**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 **(신청 기간) '24년 8월 5일(월) 9:00 ~ 8월 23일(금) 18:00**

※ 신청기간 관련 세부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며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반드시 신청마감일 내 온라인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 담당 교사*는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접속**하여 추천대상 학생의 기초정보 및 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을 **온라인 접수·제출****
  * 신청 대상 학생의 소속학교 장학 담당교사, 담임교사, 학교 복지사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제출서류)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에 추천대상 학생의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및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만 14세 미만 학생 추천의 경우, 반드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2번) 내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긴급구난 사유제출 증빙은 소속 학교에서 추천한 내용으로 인정(단, SOS 장학금 신청서 내 소속 학교장 추천 및 직인 필수)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신청시 제출 (신청서류)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학생 기본정보 ※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멘토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제출 불필요
	2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학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
	3	SOS 장학금 신청서 표지	학생	학생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확인 등 ※ 신청 시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 · 직인 필수
	4	SOS 장학금 신청서	학생	학업 의지 · 계획 및 긴급 위기 상황 등 구체적 서술

○ 2단계 서류 심사

- **(제출서류 점검)** ①**신청자 학년 정보**(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②**만 14세 미만 신청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③**필수 신청서류 3종*** **제출 유무** 및 ④**필수 기입사항**(서명 등) **점검** 등

  *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SOS 장학금 신청서 표지, SOS 장학금 신청서

○ 3단계 심층 평가 및 최종 선발

- **(SOS 평가단 구성)** 서류심사 통과자의 **「SOS 장학금 신청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천·구성**

  ※ 꿈 장학금 심층평가 위원 POOL 활용

- **(평가내용)** **「SOS 장학금 신청서」**에 기술된 긴급한 위기상황의 정도, 학업의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평가그룹별 **3인 1조**로 구성하여 **산술평균*** 후 학제별 배정인원 범위 내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부여****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선발 방법) 학제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심층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부여**하며, **평가 후 서류제출 결과**를 **최종 장학생 선발**

  · 최종 선발일 이후 최초 장학금 지급일 전까지 **선발인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추가 선발 가능**

  ※ 신속 선발 및 지원을 위해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안내)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선정 결과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사항 **개별통보 예정**

Ⅳ 장학생 지원

가. 장학금 지원

자격유지 중인 장학생에 한하여 **매월 카드포인트 방식**의 **장학금 지급**

□ 지원금액: **유형별·학제별 장학금 지급**(카드포인트 지급)

○ **(꿈·다문화 장학금)** 학제별 월 25만 원 ~ 45만 원 차등 지급

○ **(SOS 장학금)** 학제 상관없이 월 30만 원 균등 지급

〈 유형별 장학금 지원 내용 〉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꿈·다문화 장학금	월 25만 원	월 35만 원	월 45만 원
SOS 장학금	월 30만 원('24년 대학 진학자도 동일 적용)		

〈 장학금 수혜 시 유의사항 〉

· **학적변동**(**자퇴, 휴학, 복학, 조기졸업, 편입학,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등**) **발생 즉시** 장학생은 재단으로 알려야 하며,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일 이후 장학금 초과 수혜 시 반환 또는 최대 지원 횟수에서 차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기간

○ **(꿈·다문화 장학금) 매년 계속 장학생 정기**(2월)·**보완**(8월)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 예정**

- **대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별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 가능****

* (예시) 2년제 전문대 → 2년 지원, 4년제 → 4년 지원, 6년제 → 6년 지원

** 초과학기 및 대학원 등은 지원 불가

○ **(SOS 장학금)** 선발 후 **총 10개월간 한시적 지원**

- 지원기간 중 학업 중단 시 학업 중단일 익월부터 장학금 지원중단
- 학년 미진학·상급학교 미진학 시 차년도 2월까지만 지원

〈 학적변동 사유별 장학금 지원 여부 〉

구분			지원 여부	
1	대학생	재입학, (타학교)신입학, 편입(상급학교 진학 포함), 전공심화과정 진학	지원 가능	신규 진학한 대학 학제의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기 수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장학금 지원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지원 가능
			지원 불가	직전 학기 중퇴 후 사유 발생 시에는 학업중단에 해당되어 지원중단
2		교환학생	지원 가능	소속학교 학제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되며 장학생 카드사용은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
3		휴학	지원 불가	휴학 시 장학금 지원중단(자격유예) ※ 학기 중 휴학 시 복학시점까지 장학금 지원이 유예
4	고교생	고교 졸업 후 대학교 미진학자*	지원 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대학교 미진학자는 지원중단 ※ 단, 계속지원 장학금 신청 및 심사 승인 시 1년 간 1회에 한하여 자격유예 → 졸업 당해연도(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2월)까지

* 재수생 및 사관학교 훈련, 실습과정 수료 등 대학 입학 관련 선행 과정 수료 필요자

※ 학적변동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장학금 초과 수혜 발생 시 **최대 지원횟수에서 차감** 또는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방식: 장학금 카드**(장학금 지원액만큼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 **(발급 방법) 재단 협약 금융사**를 통해 **장학금 카드 신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및 **학생증** 지참 후 **하나은행***(하나카드)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 장학금 카드는 재단과 협약한 금융사에서만 발급 가능(협약 금융사가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만 14세 미만*** **장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카드발급 **필요**

  * 만 14세 미만 학생('10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사용기준)** 장학금은 **매월 5일 지급**되며, **현금 지급 및 인출 불가**

-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차년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나, **미사용 잔액**은 **차년도 3월부터 사용 불가**

※ 매월 장학금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속지원 정기·심사기간에는 5일 이후 지급 가능

- **지원종료자***의 경우, **지원종료일**을 **기준**으로 **당월 말까지 사용기간 보장**

* 졸업, SOS 지원기간(종료일 다음 날부터 산정) 등 정상 종료자를 의미

※ 자격박탈, 자격중단 등 비정상 종료자의 장학금 사용기간 관련 상세 내용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사용범위: 학업장려비로 사용 가능

○ 생활비가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의 필요(해외사용 불가)

① **교육 학습 및 진로역량 개발 지원**: 교육비, 서적, 문구, 학원비 등

② **진로·적성 탐색기회 지원**(체험학습, 취미·레저 포함): 문화·취미 등

③ **학업 환경 조성 지원**: 일반음식, 음료, 식품, 안경 등

※ 장학금 카드 사용가능 업종: 총 78개 업종(별첨 참고)

- **(적정사용 점검) 부적절한 장학금 사용**으로 의심될 경우,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에 **비협조적**이거나 **소명**이 **불가한 경우 장학생 지원제한 기준**(p.39 참고)**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장학금 카드사용 유의사항 〉

- [**온라인 사용 우선소명 유의**] **온라인 카드사용**은 재단의 정기 모니터링에서 **우선 소명 대상**이 됨을 참고하여 신중한 카드사용 필요
- [**장학금 카드사용 불가 업종**] 가정 · 차량 관련 용품 구입, 금융 · 공과금 관련 지출, 상품권 구매, 숙박, OTT, 목욕 · 미용 · 안마 등 생활서비스 일체 등의 **가계 생활비 용도**에 해당하는 **카드사용**은 **절대 불가**

※ 실질적으로 사용에 제한되는 가맹점(ex. OO포차)인데, 가맹점의 업종 등록만 허용 업종(ex. 일반음식점)으로 한 경우,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사용 제한 가능

❖ **카드사용 소명 불가 시 향후 지급될 장학금에서 해당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등의 조치 가능**

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 꿈 장학생의 성장 및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후 **교육부 승인하**에 **실행**〉

□ 복꿈 성장 멘토링(교직원 등 교육현장의 전문가와 1:1 멘토링)

[교육목표] 장학생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으로 안정적 성장 도모

- (교육대상) **중·고 장학생(장기지원 유형)** 의무 참여
- (교육일정) 연중(학기별 2회 이상, 연간 4회 이상 필수)
- (교육내용) 멘토와 다양한 멘토링 활동(문화활동, 진로 · 진학 상담, 개인상담 등)

- **(멘토 지정)** 장학생 선발 전, 학생과 상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멘토링 지원이 가능한 멘토의 정보를 입력(**필수기입 정보**)

  ※ 장학생 선발 전 ①**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②**개인정보동의서**, ③계좌정보 제출 필수

  – **(자격요건) 멘토**는 장학생의 **소속학교 교직원**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장학생 신청 시 신청 교사 역할을 병행**

  ⇒ **장학생**의 **성장 지도**가 **가능**하며, **결격사유 없는 자***를 멘토로 지정(**학교장 확인 필수**) * 「복꿈 성장(1:1) 멘토링 · 멘토 자격 결격 사유」 참고

  – **(멘토 변경) 멘토**는 **학년 단위**로 **변경 가능**

  ⇒ 멘토 변경 시에는 ①**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②**개인정보동의서**, ③계좌정보 제출 필수

  질병 ·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불성실 활동 등의 자격 제한 사유 발생에 한하여 소속학교 교직원으로 멘토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장학생**(또는 멘토)은 **재단에 즉시 연락**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 소속외 담당자로 멘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단 승인 필요

- **(멘토 지원)** 멘토링 활동 지원비*(회차별 10만원**), 멘토 위촉장(교육부 장관 명의), 멘토링 가이드북 등 제공

  * 학기별 2회(연간 총 4회) 멘토 개인 계좌로 지급

  ** 장학생의 진학(중→고) 후에도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활동비 10만원 추가 지급

- **(활동 점검)** 장학생과의 멘토링 활동은 정기심사 시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를 통해 점검

〈 복꿈 성장(1:1) 멘토링 멘토 자격 결격 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현재 정치활동 중이거나 멘토링 활동 기간 중 정치활동 예정 중인 자
- 특정 이념에 치우친 활동을 진행했거나, 예정 중인 자
- 멘토링 활동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소 권장 멘토링 활동 횟수 미만의 활동을 하였거나, 중도 포기 등 적극적인 활동 의지가 없는 경우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학교장 및 한국장학재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복꿈 성장 멘토링 특별활동 지원**(중·고생 대상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

[교육목표] 중·고생에게 특별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 지지 및 동기부여 강화
• (교육대상) 복꿈 성장 멘토링팀 중 희망자 • (교육일정) 6 ~ 10월 • (교육내용) 문화체험, 대학탐방 등 폭넓은 체험활동을 지원

□ **복꿈 나눔 멘토링**(대학생-중·고생 선후배 장학생간 멘토링)

[교육목표] 선·후배 장학생간 소통·교류 및 상호 성장 지원
• (교육대상) 전체 장학생(장기지원 유형) 중 희망자 • (교육일정) 6 ~ 10월 • (교육내용) 자기주도 학습법·진학 경험 공유 등 온라인 멘토링 진행

□ **복권기금 꿈사다리 페스티벌**(전체 장학생들을 위한 축제의 場)

[교육목표] 국가장학생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다양한 교육적 체험 제공
• (교육대상) 전체 장학생(장기지원 유형) • (교육일정) 7 ~ 10월(약 4개월 간, 장학생의 기본교육 이수 프로그램 운영) • (교육내용) 장학증서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명사 특강, 직업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전체 장학생에게 진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교육목표] 전문가 맞춤 지도를 통해 장학생의 진로개척 능력 향상
• (교육대상) 전체 장학생(장기지원 유형) • (교육일정) 6 ~ 11월 • (교육내용) 학년·학제별 개별 장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취업·창업 컨설팅 지원

□ **마음건강 지원**(위기학생 전문상담을 통해 치유·회복 지원)

[교육목표] 마음건강 수준 사전진단 및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전문 상담 및 회복 지원
• (교육대상) 전체 장학생(장·단기지원 유형) • (교육일정) 6 ~ 10월 • (교육내용) 마음건강 수준 검사, 전문 상담, 마음건강 칼럼 등 제공

〈 복·꿈 마일리지 제도 도입 〉

- (목적) **장학생의 능동적인 참여 기반 마련 및 자립역량 강화**
- (내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점수부여 방식**으로 운영하며,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세부 마일리지 적립 기준 마련 예정

Ⅴ 장학생 자격관리

가. 계속지원 기준

장학사업 지속 수혜를 위한 **장학생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 (계속 장학생 유의사항)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계속지원 장학생**에 대한 연도별 **자격기준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24년 꿈·재능 장학생 계속지원 기준 〉

구분		중1~중2	중3~고2	고3('25년 대학 입학 및 미진학자)	대학교 재학생
기본요건		• (공통)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 연령은 무관			
학적		• 소속학교 학년 진급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 예정인 자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교과	성적	–	• 직전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 직전학년 2회 이상 기준 미달 시 자격중단	–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백분위 80점 이상 ※ 직전학기 2회 이상 기준 미달 시 자격중단
비교과	출결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사회공헌	–			• ❶재단 지정 프로그램 참여 또는 ❷봉사활동 30시간 중 택1
	기타	•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멘토링 활동		• 학기별 2회, 연 4회 이상 의무 활동 – **(1학기) 3~8월, (2학기) 9~12월**			–
필수보고서 제출		•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 나의 성장기록(학업보고서)*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정규 **졸업 학기 종료 2개월 전 先 제출**
이중수혜		• ❶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❷저소득층 대상 ❸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❹계속적으로 수혜받는 자 ※ ❶~❹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는 지원대상 제외(세부기준 p.39 참고)			

※ 한시적 지원 대상인 SOS 장학생은 계속 지원 심사에서 제외(단, 지원 제한 사유 발생 시 자격중단)

□ 지원대상: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재학생

① (학적 상태) 중학교* 학년 진급 예정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가구원(본인, 부모, 배무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 점검

대상	내용
출결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단,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사회적 물의 여부*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❶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❷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④ (멘토링 활동) 1:1 멘토링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필수

※ 신규 장학생은 총 2회 이상 활동 필수

⑤ (필수보고서)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및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활동내역 및 멘토의견 작성

※ 멘토의 경우, 멘토서약서 갱신 필요

- **나의 성장 기록**: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기술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 지원대상: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① (학적 상태) 고등학교* 진학 또는 고등학교* 학년 진급 예정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단, 2023년 장학생선발관리위원회 및 2024년 1학기 정기심사에 따라 기존 승인받은 장학생은 졸업시까지 계속지원)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가구원(본인, 부모, 배무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교과 기준) 직전학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 직전 학년 성적기준을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중단 처리**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3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 단, 직전 학년이 자유학년(기)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년(기)가 PASS일 경우 인정(전 과목 PASS)
고1~고2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 (최대 12과목까지 입력 가능)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Ⅰ), 외국어계열(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 중에서 과목 선택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산출되는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④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 점검

대상	내용
출결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단,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사회적 물의 여부*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❶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❷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⑤ **(멘토링 활동)** 1:1 멘토링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필수**

※ 신규 장학생은 총 2회 이상 활동 필수

⑥ **(필수보고서)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및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활동내역 및 멘토의견 작성

※ 멘토의 경우, 멘토서약서 갱신 필요

- **나의 성장 기록**: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기술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 지원대상: 고등학교 3학년('25년 대학 입학 및 미진학자)

① **(학적 상태) 대학교 진학 예정 및 대학교 미진학자**

- 단, 대학교 미진학자*는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에 한하여 **계속 지원 장학금 신청** 및 **심사 승인 시 1년간 자격유예****

* (미진학자) 재수생 및 사관학교 훈련, 실습과정 수료 등 대학 입학 관련 선행 과정 수료 필요자

** (유예기간)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 시(2월)까지

※ 자격 유예는 1회만 가능하며 차년도 계속 지원 장학금 신청 필수(나의 성장 기록 필수 제출)

〈 지원 가능한 대학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가구원(본인, 부모, 배무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비교과 기준) 직전 학년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 **점검**

대상	내용
출결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단,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사회적 물의 여부*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❶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❷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④ **(멘토링 활동)** 1:1 멘토링 **학기별 2회, 연간 4회 이상 필수**

※ 신규 장학생은 총 2회 이상 활동 필수

⑤ **(필수보고서)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및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활동내역 및 멘토의견 작성

※ 멘토의 경우, 멘토서약서 갱신 필요

- **나의 성장 기록**: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기술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 지원대상: 대학교 재학생

① (학적 상태) 지원 가능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재입학, (타학교)신입학, 편입, 전공심화 과정에 진학 예정인 자 포함

②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 가구원(본인, 부모, 배무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 수급자격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③ (교과 기준) 최소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적용

-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중단 처리

* 재입학·(타학교)신입학 ·편입·전공심화과정의 경우에도 종전 학교에서의 성적 기준 미충족 이력은 누적 적용

대상	최소 이수학점	성적 기준
대학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1]	**백분위 80점 이상**[2]
대학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타학교)신입학 ·편입·전공심화과정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단, 직전학기 성적은 반드시 존재(p.26 참고)	

※ 대학생 성적기준 미충족 2회는 고등학생 성적기준 미충족 횟수를 누적 적용하지 않음

1)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2) 백분위 점수 산출은 「2024년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의 성적 산출기준을 따르며, 이 외의 사항은 대학 학칙을 준용

④ (비교과 기준) 사회공헌활동 여부 및 사회적 물의 여부 점검

<table>
<tr><th colspan="2">대상</th><th>내용</th></tr>
<tr><td>사회공헌활동</td><td>대상 및 기한</td><td>① 사회공헌활동은 대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기간부터 인정
② 사회공헌활동 필수 수료 학기에 미수료 상태로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학기개시일 전까지 자격유예 상태로 장학생 자격 유지 인정
<table>
<tr><th>구분</th><th>학제</th><th>수료 기한</th></tr>
<tr><td rowspan="2">'20년 대학입학자*</td><td>2년제</td><td rowspan="2">대학 재학기간</td></tr>
<tr><td>3~6년제</td></tr>
<tr><td rowspan="2">'21년 이후 대학입학자</td><td>2년제</td><td>2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td></tr>
<tr><td>3~6년제</td><td>4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td></tr>
</table>
* '21년 이후 편입·재입학·신입학 등을 한 경우 '21년 이후 기준 적용
** 학기 종료 전의 기준은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를 의미</td></tr>
</table>

대상		내용
	활동 내용 (택 1)	① **재단 지정 프로그램 1개 이상 활동 수료** – 복꿈 나눔 멘토링 멘토로 참여한 경우 – 재단 수기공모전에서 당선된 경우(중·고교 재학 중 당선작 인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다문화·탈북 멘토링,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사업 등 .②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2년제의 경우 15시간 이상): **증명서* 제출** * 정부 및 산하기관, 각 시·도별에서 주최하는 활동 중 자원봉사 포털(1365, VMS, 두볼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등 ※ 사회공헌활동 수료 시간은 30분 단위로 인정
사회적 물의 여부*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 처리

* ❶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❷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⑤ (필수보고서)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 **나의 성장 기록**: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작성

※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

〈 졸업생 유의사항 〉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24년 8월 졸업 예정	①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② 학적변경 신청서	'24년 6월 말
'25년 2월 졸업 예정		'24년 12월 말

①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개월 간 장학생 자격유예를 적용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며, 학적변경 신청서 및 학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유예사유 해소 가능

② 졸업예정자가 재입학, 타학교신입학, 편입, 전공심화 과정 진학으로 졸업하지 않는 경우 계속 장학생 자격 인정(단, 신규 대학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기 수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졸업예정자가 ②와 같은 사유로 졸업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 내 학적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하여 학적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2개월 간 장학생 자격유예

〈 제출 경로(재단 홈페이지) 〉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변경신청(대학생)

나. 자격점검 관리

장학생의 **계속지원 자격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점검** 실시

□ (심사체계) **꿈·다문화 장학생**의 **계속지원**을 위해 **정기·보완 심사 운영**(연 2회)

- **정기심사(3월)**: 차년도 계속 지원을 위한 기본요건, 학적 및 필수 보고서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보완심사(8월)**: 2학기 계속 지원을 위한 기본요건, 학적 등을 중간 점검

〈 계속장학생 정기·보완 심사내용 요약 〉

구분		정기 심사	보완 심사
심사시기		'24. 12. ~ '25. 3.	'24. 7. ~ 8.
① 공통	소득 기준(필요시 서류 증빙)	○	○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	
	사회적 물의 여부(연중 상시 점검)	○	
② 중학생	출결	○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	
③ 고등학생	출결 · 성적	○	
	멘토링 활동결과 보고서	○	
③ 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	○
	사회공헌활동 여부	○	○
	(필요시) 학적변경 신청서	○	○

※ 세부 내용은「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조

□ (심사절차) **장학생**의 **홈페이지 신청**을 기반으로 **재단**에서 **적격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 대상자 선발**

〈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기본절차 〉

❶ 계속지원 신청	❷ 멘토 점검	❸ 심사 및 선발
• 계속장학금 신청 • 필수보고서 작성 • 기타 증빙서류 제출	• 멘토링 활동 점검 및 의견 작성 • 멘토 서약서 갱신 • 장학생 자격기준 점검	• 장학생 신청자격 점검 • 보고서 제출 점검 •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 **최종 장학생 선발**
장학생	멘토	재단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 절차 운영

다. 장학생 지원 제한 기준

□ **(자격박탈)** 장학생 자격유지에 **심각한 결격사유 발생**

○ 향후 신규 장학생 신청 불가,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장학금 반환*(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자격중단)** 학년 미진급*, 상급학교 미진학(재수생 예외), 타 장학금 선택** 등 **장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최소 자격기준에 미달**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학년 미진학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이중수혜 기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선택하고, 꿈·다문화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 (단, 이중수혜 하는 경우에는 자격박탈에 해당)

○ 향후 신규 장학생 참여 가능,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등

□ **(자격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장학생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

○ 유예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중단, 사유 해소 시 장학생 자격복구

※ 자격유예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이월 또는 소급지급 불가,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시점의 익월부터 장학금 지급 재개

□ **(지원종료) 지원기간 종료**(SOS 유형, 대학 정규학기를 졸업한 자 등)

〈 이중수혜 기준 〉

❶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❷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❸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❹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❶ + ❷ + ❸ + ❹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이중수혜로 간주,**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제한 유형별 사유 및 조치사항〉

유형	사유	조치내용
자격 박탈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 허위청구 시점부터 수혜받은 장학금(이자·제재부가금 별도) 및 미사용 잔액 환수
	• ❶정학·퇴학 등 징계를 받은 자, ❷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❹소속학교 판단 하의 국가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 미사용 잔액 환수
	• 장학금의 장학생 외의 자(학부모 포함)가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경우 등	•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 기 지원받은 장학금 중 부정사용 금액(이자·제재부가금 별도) 및 미사용 잔액 환수
	• 장학생이 수혜기간 중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 받는 경우	•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불가 • 장학금 지원중단(즉시 사용중단) • 이중수혜 금액 및 미사용 잔액 환수
자격 중단	• 정기·보완심사 시 소득기준 확인 결과, 자격유예(최대 3개월) 후에도 수급자격이 미충족하는 경우 • 장학금 부적정 사용횟수가 연 누적 3회인 자 • (중·고생) 자퇴, 휴학, 학년 미진급 등 자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업 중단 • (대학생) 자퇴, 제적 등 자격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업 중단 • (고등학생) 직전 학년 성적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자 • (대학생) 직전 학기 이수학점·성적 기준에 2회 이상 미달한 자 • 자격유예 불성실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유예기간이 소멸한 자 •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미신청자 및 심사탈락자 •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향후 신규장학생 신청 가능 ※ 장학생 선발과 기존 수혜 여부는 무관 • 장학금 지원중단 • 미사용 잔액 환수(단, 지원종료일 기준 익월까지 사용 가능) • 계속장학생 정기심사 미신청자 및 심사탈락자, SOS장학생 대학교 미진학자의 경우 당해연도 4월 말까지 미사용 잔액 사용 가능

<table>
<tr><th>유형</th><th>사유</th><th>조치내용</th></tr>
<tr><td rowspan="2">자격
유예</td><td>•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어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장학생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대학생) 휴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군입대 포함)
• (고교 졸업생(재수예정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해연도의 대학 미진학자로 정기 계속심사를 통과한 자
※ 유예기간은 졸업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 시(2월)까지로 1회에 한하여 적용</td><td rowspan="2">• 유예기간동안 장학금 지원중단
• 미사용 잔액은 장학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
•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 단, 유예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은 소급 지원 불가</td></tr>
<tr><td>• 계속심사(정기·보완) 시 소득기준 자격 미충족시 최대 3개월 자격유예 및 수급자격 재점검
• 매년 장학생의 활동 점검 결과, 활동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table>
<tr><td rowspan="4">불성실 기준</td><td>장학생 연락 두절*</td><td>3개월</td></tr>
<tr><td>장학금 부정사용 소명 불응</td><td>3개월</td></tr>
<tr><td>대학졸업자 보고서 미제출</td><td>2개월</td></tr>
<tr><td>사회공헌활동 의무 불이행</td><td>3개월</td></tr>
</table>
* 재단 최초 연락일부터 90일 기준</td></tr>
</table>

※ 상기 지원 제한 사유 및 조치내용은 예시(안)으로 구체적인 사유 발생 시 이에 준하여 판단하되 학생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내용 결정

※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관한 일체 내용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1.1.시행) 및 동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지원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장학생 · 멘토 준수사항 〉

1.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2. **장학생**은 재단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3. **장학생**은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재단**에 **즉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장학생에게 있음** (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
4. **장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 시 기본(학적)정보,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장학생 기재사항**을 **스스로 작성**하고, 필요 시 기타 서류 등을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함
5. **장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 후 **수정사항**(필수보고서 등) **발생 여부**를 **재단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사항 미보완으로 인한 자격중단 시 귀책사유**는 **장학생에게 있음**
6. **장학생**은 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성장도 측정조사** 및 졸업 이후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추적조사**(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7. **장학생**은 **장학금**을 생활비 목적이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부정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8. **장학생**은 국가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9. **장학생 및 멘토**는 **재단**에서 **요청**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함
10. **멘토**는 장학생에 대한 **올바른 장학금 카드사용 지도**와 함께 **멘토링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11. 장학생 • 멘토는 **학적 변동** 및 **장학생의 자격 유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해야 하며, **필수 서류 등**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함

Ⅵ 장학금 지급 사후관리

가. 카드사용 점검 관리

장학생의 **학업 목적 범위 내 카드사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장학생의 **올바른 학업장려비 사용 유도**를 위해 장학금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부적정 사용 소명관리** 추진

〈 장학금 카드사용 점검 관리 기본절차 〉

❶ 모니터링	❷ 소명대상 등록	❸ 소명대상 안내	❹ 소명완료 조치
장학생별 장학금 카드 사용내역 수신 및 확인	모니터링 결과, 부적정 사용 의심 건 소명대상으로 등록	소명대상 장학생에게 소명방법 등 안내 (문자 발송)	장학생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완료 또는 불가 조치
카드사 ↔ 재단	재단	재단 → 장학생	장학생 ↔ 재단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 절차 운영

○ **(점검방법)** 장학금 카드 사용내역을 **3가지 기준**에 따라 점검

① **(사용제한업종 사용여부)** 카드 사용 가능 업종 범위 외 사용여부 점검

❖ **(장학금 카드사용 우선소명 대상)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온라인 결제 사용**

구분	인터넷 상거래	PG*	오픈마켓**
주요 가맹점명	네○버파이낸셜(주) 네○버페이 등	이니○스, TOSS, 쿠○(○페이), 카○○페이, N○○한국사이버결제(KCP), 모빌리○○ 등	11번○, G마○, 옥○ 등

* PG: 전자지급결제대행, 가맹점 등과 계약을 통해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서비스 업체
** 오픈마켓(Open Market):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몰

② **(키워드명 검색)** 학업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키워드 적용

※ 예시: (사용 불가 항목) OTT 구독 및 게임 등 서비스 결제, 상품권 및 환금성 결제 등, (주점 사용) ○○포차, ○○호프 등 (가계 생활비 사용 의심 키워드) ○○백화점, ○○홈쇼핑 등

③ **(고액결제 점검)** 불명확한 거래건 중 **단일거래** 또는 **특정 가맹점**에서 **반복결제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역 점검

○ **(후속조치) 모니터링 소명 부적정 대상자**의 경우, 지원제한 조치

※ 소명 불응 시 자격유예, 소명 불충분 시 해당 금액 차감 지급, 장학금 부적정 사용횟수 연 3회 이상 발생 시 자격중단 등 조치 가능

나. 장학금 반환관리

자격 제한 확인 등에 따라 **기지급**된 **장학금**의 **반환관리 실행**

□ 장학생의 **자격 제한사유**(자격유예, 자격중단, 자격박탈 등) **발생**에 따라 **부적정 지급** 또는 **수혜 가능횟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반환관리** 실시

<복권기금 장학금 반환관리 절차>

기지급된 **장학금**의 **반환 필요 사유 발생 시, 장학금 반환 실시**

① 사후관리에 따른 반환대상자 반환 절차

반환사유 통지	반환금 산정*	반환 결정 · 통지	장학금 반환
반환사유 발생 즉시 재단으로 반환사유 통지	반환사유 인지 즉시 사유발생일 및 반환대상금액 확인	사유발생일 이후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금 결정 · 통지	재단이 반환을 통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일시반환 또는 분할반환 약정 체결
반환대상자 → 재단	재단	재단 → 학생 · 학부모	학생 · 학부모 → 재단

* 장학금 반환액 산정 시점에 반환대상자의 장학금 미사용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차감하여 반환금 산정

② 부정이익 환수 대상자 환수 절차(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 준수)

부정이익조사대상자 지정 · 관리	정기조사 계획 수립	정기조사 실시 및 조사 종결	부정이익환수대상자 지정 · 관리
부정이익 조사 대상자 환수 필요 여부 확인	정기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 안내	부정청구 확인, 조사결과 통보,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환수처분통지 (납부고지)
재단 → 반환대상자	재단	재단 → 학생 · 학부모	재단 → 환수대상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세 절차 운영

□ 공공재정환수법*('20. 1. 1.시행)의 적용 안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근거

○ 부정청구 발생 시 환수에 관한 일체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행위* 구분**(아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유형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청구 환수금액 산정: 부정이익 가액[1)]+이자[2)]+제재부가금[3)]

1) (부정이익 가액 산정)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산정(아래 표 참고)

2) (이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수로 이자 계산(「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른 이자율 적용)

3) (제재부가금 산정)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산정(아래 표 참고)

유형	부정이익 가액[1)]	제재부가금[3)]
허위청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부정이익 가액의 5배
과다청구	과다청구 공공재정지급금 –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액	부정이익 가액의 3배
목적외사용	목적외 사용된 공공재정지급금액	부정이익 가액의 2배
오지급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없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발생시 환수 절차**

– 신고(적발) → 조사 → 환수처분 및 지급취소·중단 → 조사 결과 통보 및 부과통지서* 발부 → 이의신청 → 독촉 안내문 발송 → 재산조사 → 납부최고서 발부 → 압류 → 매각(공매) → 청산(배분)

* (가산금 발생) 부과통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최대 5% 이내에서 가산금 부과

□ 장학금 반환 부담 경감제도 운영

○ 대상자가 반환이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반환부담 경감제도**를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반환 이행 도모**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환금 면제·유예 여부 결정**

※ 단, 반환 사유 발생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장학금 반환 면제·감면 및 유예 유형 〉

구분	유형	사유
면제 및 감면	[유형1] 사망	• 장학생 본인 사망 시
	[유형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 및 시설에 위탁 중인 경우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유형3] 장애판정	• 장학생 본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유형4] 중증질환	• 장학생 본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구분	기준	유형	사유
유예	나이 무관	[유형1]	• 학생 본인의 출산
		[유형2]	• 군복무(예정)자
		[유형3]	• 학생 본인이 장애인
	만19세 미만 학생 한정	[유형4]	• 부 또는 모의 사망
		[유형5]	• 부 또는 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유형6]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유형7]	• 부 또는 모가 중증질병* 발병 시 *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상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기타	[유형8]	• (예외적 사유) 기타 등의 사유로 반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면제비율 및 제출서류 등 세부 기준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Ⅶ 추진 일정

※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 가능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계획 확정	~ '24. 3월		교육부, 재단
사업공고	'24. 3월 말		홈페이지, 시도교육청 등
장학생 모집	[꿈·다문화] <약 4주>	'24. 4. 1.(월) 9:00 ~ 4. 26.(금) 18:00	소속학교에서 추천(신청)
	[SOS] <약 3주>	'24. 8. 5.(월) 9:00 ~ 8. 23.(금) 18:00	
선발 심사	[꿈·다문화] <약 2개월>	'24. 4 ~ 6월 (7월부터 지원)	재단 (선발 유형별 평가단 운영)
	[SOS] <약 1개월>	'24. 9월 (9월부터 지원)	
교육 지원	[성장 멘토링] – 1:1 멘토링	연중 상시 (학기별 2회 이상 활동 필수)	재단 (개별 프로그램 대상자 별도 안내)
	[나눔 멘토링] – 선·후배간 멘토링	'24. 6 ~ 10월	
	[멘토링 특별활동] –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24. 6 ~ 10월	
	[복·꿈·페] – 장학생들만의 축제	'24. 7 ~ 10월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 장학생 진로설정 보조	'24. 6 ~ 11월	
	[마음건강 지원] – 위기학생 치유·회복 지원	'24. 6 ~ 10월	
계속지원 심사	[심사 안내]	'24. 12월 초	재단 (개별 장학생 심사 진행 시 추가 확인·요구사항 발생 가능)
	[신청 접수]	'24. 12월 ~ '25. 3월	
	[심사 완료]	~ '25. 3월	

〈 문의처 〉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
- (연락처) 1599-2290
- (홈페이지) www.kosaf.go.kr(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
- (장학생 커뮤니티) https://cafe.daum.net/dreamladder-kosaf

Ⅷ 2024년 실행예산(안)

(단위: 원)

사업명	구분	세부내역	금액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사업비	장학금*	29,963,000,000
		멘토링 활동지원비	1,987,000,000
		위탁사업비 (증서수여식, 멘토링캠프, 진로컨설팅 등)	1,735,000,000
		인쇄비 (장학증서, 멘토링 가이드북 제작 등)	130,000,000
		공공요금	50,000,000
	소 계(A)		33,865,000,000
	운영비	자문료 및 수당 (심사, 위원회 운영 등)	168,400,000
		회의비 (설명회, 위원회 운영 등)	1,500,000
		국내여비	19,100,000
		사업추진비	12,900,000
		위탁사업비 (도급인력, 전산유지보수 등)	292,408,000
		광고선전비	30,000,000
		인쇄비 (설명회 자료 제작 등)	200,000
		공공요금	13,192,000
		수수료 및 사용료	23,800,000
		특근매식비	1,500,000
	소 계(B)		563,000,000
총 예산(A+B+C)			34,428,000,000

* 원금보전성 기금 운용수익 2,015백만 원 포함

※ 향후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예산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

별첨 장학금 카드 사용 가능범위 안내

용도 1. 교육 학습 및 진로 역량 개발 지원: 총 15개 허용

구분	업종	상세 안내
교육 및 교육지원	교복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입시학원,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예체능 계열 학원	음악, 미술, 무용, 연기, 예술학원
	무술도장	학원과 유사한 수련시설
	기술, 직업훈련학원	통신교육, 통신기술 학원, 자동차정비 학원, 미용 학원, 직업훈련원 등
	기타 교육, 교습, 학원	컴퓨터학원, 개인교습소, 전화 및 인터넷온라인교육, 학교 및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원 등 (독서실, 고시원 포함)
	스터디카페	
서적 문구	서적	서적, 잡지, 출판 (신문, 정기 간행물 등)
	교육 및 교구	학습지 및 학습교구
	문구, 사무용품	문구용구, 필기용구와 회화용구, 사무용품 포함
가전 전자 컴퓨터	통신기기	핸드폰, 전화기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프린트기, 마우스 등) 포함

용도 2. 진로·적성 탐색 기회 지원(체험학습, 취미레저 포함): 총 20개 허용

구분	업종	상세 안내
여객 화물 운송	고속, 시외버스	
	철도	고속철도 포함
	여객선	
	택시	
	지하철	※ 후불교통기능(지하철, 시내버스)은 만 18세 이상 고객에게 발급 가능하며, 카드발급 시 교통기능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내버스	
	기타 승객운송업	관광버스, 학교버스, 셔틀버스 등
여행 오락 휴식	테마파크	놀이시설, 놀이공원, 유원지, 관람 목적 수족관 등 (단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휴양림 등의공공요금은 결제 불가할 수 있음)
	기타 문화시설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역사박물관, 사적지 등
취미 레저 스포츠	헬스클럽	
	영화, 공연장	연주홀, 뮤지컬, 오페라, 연극전용관, 스포츠관람등
	기타 취미, 레저	기원, 수영장, 볼링장 등
	종합 스포츠용품점	스포츠의류, 운동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매장
	전문 스포츠용품점	등산, 낚시, 골프, 헬스 용품 등
	악기 판매점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등 각종 악기 판매
	비디오, 음반	DVD 판매점 포함
	화방, 표구점	화랑 등 (단, 예술품, 골동품은 사용 불가)
	기타 레저 용품	어항, 수족관, 체육사 (취미용품포함) 등
기타	미용재료	
	카메라, 캠코더	사진용 화학물, 사진필름, 사진 장비

용도 3. 학업 환경 조성 지원: 총 43개 허용

구분	업종	상세 안내
식음료	제과, 제빵	
	기타 식음료품	떡집, 방앗간, 자판기 판매 등
유통 판매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소비조합(구내매점)	소비조합, 공공기관 및 회사 구내매점 등
	기타 종합소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 병원 내 매점 등
	연쇄점	
	(온라인)PG(일반)	*정기 모니터링 시 우선 소명 대상
	(온라인)공공서비스	
	(온라인)PG(오픈마켓)	
	(온라인)PG(기타)	
	(온라인)인터넷상거래	
음식점	일반음식점	*단, 상호명이나 간판에 맥주, 호프, 와인, 주점 등 확인되는 경우 사용 불가
	중식전문점	
	일식전문점	
	서양식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전문점	
	기타 음식점	
의류 잡화 등	일반의류	*단 아동복 및 유아복은 결제 불가할 수 있음
	내의류	런닝, 팬티, 브래지어, 잠옷 등
	구두, 신발	구두, 운동화 등 각종 신발류
	안경, 광학제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한 각종 안경 등
가구	가구판매점	목재 가구, 주방용 가구 등 각종 가구 판매
가구	가구	가구 전문점
보건의료	종합병원, 일반병원	
	일반병원	
	기타 전문병원, 의료업	건강검진기관 전문기관, 보건소 등
	한의원	
	치과	
	안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과	청소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약국, 한약방	
	한약방	한약국 포함

유의 사항. 카드 사용 모니터링 안내

※ 장학생의 올바른 학업장려비 사용 유도를 위해 **장학금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카드사용은 정기 모니터링 시 우선 소명 대상**이 됩니다.

※ 사용 제한 업종 및 품목에서 결제 이력이 확인될 경우, 모니터링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육적 목적의 장학금 사용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미제출 시 장학생 지급중단 및 자격유예 적용
- 소명 불충분 시 향후 지급될 장학금에서 해당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 장학금 부정 사용 횟수가 연 누적 3회 발생 시 장학생 자격중단 등 조치 가능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장학금 카드사용이 불가합니다.

① OTT 및 미디어 구독 서비스 요금

② 게임 관련 결제

③ 가정용품: 침구, 커튼, 수예품, 정수기, 비데, 주방용품, 보일러 등

④ 차량 관련 용품: 자동차(오토바이, 자전거 포함) 관련 수리, 부속 용품 등

⑤ 숙박 관련 비용: 호텔, 콘도, 펜션, 모델 등

⑥ 금융 및 공과금: 은행 예치, 보험 지출, 세금·관리비·통신요금 등

⑦ 생활 서비스 이용: 목욕, 미용, 피부관리, 안마, 세탁, 사진 촬영, 광고 및 인쇄, 운전 대행, 각종 렌트, 가례, 부동산 임대비 및 중개 수수료 등

⑧ 사치품 및 귀중품: 특급 호텔, 모피, 무스탕, 시계, 귀금속, 유흥, 사치품목

⑨ 기타: 기부금(정치자금), 각종 단체회비, 상품권류 구매 등

※ 결제가 완료되더라도 정기 모니터링 시 소명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으로 비교육적 목적 사용이 확인된 경우 장학금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가맹점 확인] 장학금 사용이 허용된 품목이더라도 가맹점 계약 시 등록된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가게에서 결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결제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시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인지 하나카드사(1800-1111)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